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8. 7.(목)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3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33차 회의의 회의록, 제34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34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관한 건 (2014-35-09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한국방송공사·방문진(MBC)·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제·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방송법은 5월 28일 공포되어 8월 29일 시행,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6월 3일 공포되어 9월 4일 시행 예정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7월 9일 시행령 제·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고, 7월 15일~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설·강화 규제사항이 없어 규제심사는 생략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한 대비 의결안 비교표입니다. 최초 입법예고(안)에서는 특히 후단의 '선거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말한다'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결(안)에서는 후단에서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안)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법령 제·개정할 때 규제심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추진경과에 보면 신설·강화 규제사항이 없어 규제심사를 생략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추가됨으로 인해 이것도 일종의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그런 면은 있는데 통상 규제여부를 판단할 때 요새 말하는 피규제대상이 아주 넓은 국민 전체나 아주 많은 기업일 경우가 주이고, 아주 일부에 국한되는 이사들 몇몇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이 고려가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사 응모자들에 대해 분명히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규제에 등록할 만큼 규제의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문진법 시행령, 여태까지 없었지요?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결격사유만 하나 들어가서 시행령을 제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굉장히 특이한 경우 같은데...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그런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목적과 결격사유 2개 조항으로 해서 시행령(안)이 만들어졌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요.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대통령선거에서 자문, 고문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방송사에….

○ 고삼석 상임위원

- 더 근본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논의과정이나 이런 것들, 배경을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논의과정의 세부내용을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 왜 어렵습니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에 따라 방송법과 관계법들을 개정했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앞부분의 경과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이 헌 행정법무담당관

- 자세한 것은 아시겠지만 이 법에 대해서는 결국 KBS, MBC, 방문진, EBS의 사장·이사들은 소위 말하는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장이나 이사를 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해서 그런 정치성을 어느 정도 배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한, 궁극적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장과 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 현 행정법무담당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선기구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강화된 결격사유를 보면 정당법에 의한 당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다음 공직선거법에 의해 취임했던 공직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다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의 신분을 상실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러한 조항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 이 현 행정법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서 말씀 드렸듯이 오늘 저희가 심의·의결하는 방송사 사장·이사 결격사유 관련 시행령 제·개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구성해서 운영한 국회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특위는 특히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의 결격사유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법이 개정되고, 또 저희가 후속으로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보면 결국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또 이를 통해 보도와 경영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실현하자, 이것이 관련된 법과 시행령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현 행정법무담당관

- 판단에 대해서는...

○ 고삼석 상임위원

- 입법취지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이 현 행정법무담당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해 놓자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KBS, MBC, EBS와 관련해서 임원들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당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넣는 시행령의 의결안 안건 2페이지 박스 안을 보면 '구체적인 범위는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하여' 여기까지는 매우 좋고, 그다음에 '자문이나 고문을 역할을 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자문이나 고문이 아니고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 이 현 행정법무담당관

- 저희 쪽 판단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통상 이 조직에 속하여 활동을 하면 자문이나 고문의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 김재홍 상임위원

- 포함을 시켜야겠지요?

○ 이 현 행정법무담당관

- 단순한 행정사무가 아니면 현 조문으로 대부분 다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선거기구를 보면 조직이 여러 가지이고 명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특보, 고문, 자문위원이 있는데 그냥 정책위원, 민생대책위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명기해 놓으면 '나는 자문이나 고문이 아니었다, 그냥 위원이었다'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허점과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하여 활동한 사람을 말한다'고 하면 자문, 고문, 위원 구체적인 명칭 필요 없이 다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린 취지는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하면 다 됐습니다. 선거대책기구든지,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 이것이 조금 문제를 제기할 소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런 기구에 속하여 활동한 사람, 아마 방송법 모법에는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 이 현 행정법무담당관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인데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은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관위 조직에 속하여' 여기까지 충족합니다. 그다음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활동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 의견에 제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이것이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시행령이 제한은 하되 법률에서 정한 규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48조제1항제5호를 보면 앞단은 생략하고,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이렇게 딱 한정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포괄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우려가 있고 기존의 제48조제1항제2호에 보면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규정도 있고, 또 제4호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체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체계상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여기에서 입법취지를 분명히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특보로서 활동한 사람은 해당 안 되는 것입니까, 자문이나 고문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 이 현 행정법무담당관

-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보단 안에서 활동을....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모법에도 자문이나 고문이라고만 해 놓았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정무특보, 기획특보, 민생특보로 활동한 분들도 많습니다. 또 무슨 위원, 정책위원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나 특보로 활동한 사람은 자문이나 고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법에는 일일이 다 명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것이 몇 차례 논의한 것인데 이 헌 과장도 답변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행령 안에 보면 분명히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그런 조직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어떤 위원회의 일원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명칭 외에 어떤 또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에 '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가 모법에 제가 아까 예를 든 그 규정과 시행령안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이 내용 문구를 잘 보고 우리가 '등'에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가 해석으로서 해야 할 부분인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비합리적으로 일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다고 해서 자문단, 특보단의 사무직을 수행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특보나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사람도 배제하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관련 조직에 속하여 활동한 사람으로 해 놓고 나중에 시비가 생기고 굳이 그런 분들 누군가가 다 해야겠다고 나서면 역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법취지를 넘어서서 규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대체로 입법취지를 헤아려 보면 제가 말씀 드린 그런 것인데, 오히려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이렇게 규정해 놓는 것이 어떤 범망을 피할 수 있는 틈새를 만들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이러이러한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하여 활동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무처 사무직을 수행한 사람이나 또는 대학교수나 어떤 전문가가 일회성으로 정책프로젝트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거의 상근체제로 활동한 사람을 규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은 역시 자문, 고문, 특보, 위원까지는 포함을 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포괄적인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자문, 고문의 역할로 한정하는 것은 특보나 위원을 빠뜨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냥 넘어가도 나중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나올지 모르지만 시행령을 좀 더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정리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좀 더 명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도 자문이나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자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특보, 정책위원 이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사

람들의 업무가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고 도움을 주는 것들이니까 그것은 결국 자문의 해석에 의해 포괄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법 자체가 규정된 것도 그런 자문의 개념을 그렇게 넓게 봤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시행령을 만들 때 여기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법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했으니까 시행령에서는 자문은 어떤 것이고, 또 고문은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방법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자문이나 고문을 해 주는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령에서 자칫 잘못 규정하다가는 또 범위가 축소되는 우려가 있어서 결국에는 할 수 없이 이 자문이나 고문은 해석에 맡기고, 다만 대상, 그 기구를 저희가 특정 하는 정도로 시행령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의견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문’이라는 정의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사전에 정의된 대로 읽어드리면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향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조직들이 특정되어 있고, 그리고 ‘등’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의 사전적 해석도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거의 다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당의 선거조직을 보면 이런 공조직뿐만 아니라 사조직, 그리고 비밀조직, 그다음에 개개인으로 자문을...,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조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개인자격으로 자문해 주는 사람까지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모두 망라해서 법에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법취지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를 우리가 잘 적용해서 운영한다면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제가 김 위원님과 이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문, 고문, 특보 이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자문, 고문이라고 하는 명칭 이름에 구애되지 말고 법에 규정해 놓은 자문, 고문의 의미를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이렇게 한 것은 우리 법에 자문과 고문의 규정을 다시 시행령에서 푸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다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활동을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당연히 특보단의 특보하면 당연히 우리가 규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책위원이든지 특보든지 이렇게 그 선거조직에서 의미 있는 자문과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정도가 되면, 적어도 KBS, MBC, EBS 방송사의 임원 정도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면 그 정도의

네임밸류(name value)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여기에 포괄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결격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이렇게 규정해도 해석상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논의를 통해 충분히 명료화된 것 같고 원안대로 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논의한 결과, 해석상 약간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게 규정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논의한 결과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주)KNN 등 3개 사업자 (2014-35-100~10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 문은 '지역방송 제작비 투자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KNN, (주)제주방송, (주)대전방송 3개 민영방송사업자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3개 민영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내용 및 피심인 의견입니다. 위반내용은 지역방송의 제작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14%)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관련 사항을 매년 점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KNN, (주)제주방송, (주)대전방송 3개사의 '12년 또는 '13년 제작비 투자 실적이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에 미달되어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세한 사업자별 '12년, '13년도 제작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심인 의견입니다. 3개사 모두 제작비 관련 재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추후 제작비 투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개사는 경영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재허가 조건을 준수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종편에 대한 관련 시정명령 사례, 콘텐츠 투자 유도를 위한 조건부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정명령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제작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집행토록 하되 일정금액을 미이행 제작비에 가산하여 집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14년 12월말까지 미이행 제작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제작비를 보면 KNN은 2억 1,000만원, 제주방송은 7억

5,300만원, 대전방송은 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2.5%)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할 경우에 KNN 500만원, 제주방송 1,900만원, 대전방송은 1,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한편 시행명령 여부 확인 방법으로는 사업자로부터 미이행 제작비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을 제출받고 그것을 반기별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명령 이행 여부는 연도별로 전체 제작비 투자액 중에 매년 당해연도 투자해야 할 금액을 우선 고려한 후에 나머지 투자액을 대상으로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말씀 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시정명령(안)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대비 14% 이상을 제작비로 투자토록 한 재허가 조건에 대한 '12년도 또는 '13년도 위반과 관련하여 미이행 제작비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집행하되 미이행 제작비에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2.5%)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집행할 것, 다만, '14년 12월 말까지 미이행 제작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그리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은 '14년 9월 5일까지 제출하고,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기준에 따라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 반기별로 제출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매 정해진 시일에 이행실적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의결서(안)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주 형식적인 내용입니다만 3페이지 검토의견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집행토록 하되 일정금액을', 이 일정금액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밑에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일정금액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내용 그것 하나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정명령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시정명령(안) 첫 번째 항 셋째 줄에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라고 했는데 '최근 3년 평균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을 조금 명확하게 표시해서 시정명령을 받는 사람이 오해가 없도록, 그것은 형식적인 사항인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단어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이 시정명령(안)에도 그렇고, 3페이지 밑에 참고표시에도 그렇고 똑같이 '3년간 연평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이 지상파 28개사가 대상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28개사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 재허가 때 받은 조건부 이행결과를 중간점검하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중에서 3개 방송사만 말하자면 지적사항이 나온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콘텐츠 제작투자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다른 방송사는 다 괜찮은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지금 그 당시 부과했던 조건 내용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았고, 그 결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3개사 이외 다른 25개사는 최소제작비투자비율 이상 제작비를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회계검사를 주로 해서 방송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번에 발표한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정책비전,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3년, 4년마다 시행하는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3년, 4년간 누적시켜서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재승인, 재허가 심사 때 받은 조건부를 이행해 가는지 여부를 연간 또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것이 제3기 방통위가 제1·2기와 다른 매우 중요한 차별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번부터는 중간점검을 매우 엄정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는 것은 계도의 성격이 있거나 행정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다음부터라도 자신들이 내놓은 사업계획서와 심사과정에서 받은 조건부 이행을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해 주십시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정명령 안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해당 방송사는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증을 직접 담당할 회계법인의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합니까? 이것이 사업자들에게 맡겨진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일정 정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여기에 쓰여 있는 회계법인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사업자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 자료 받은 것은 따로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들이 임의로 제출하지 말고, 이것이 보통은 반기로 제출하기 때문에 결산이 완료되지 않는습니다. 그래서 그 전이라도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에게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4페이지 사업자별 위반내역을 보면 지금 사업자별로 미이행 금액의 규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KNN과 대전방송은 실제로 저희가 정한 최소 제작비 대비 미이행금액이 10% 미만입니다. KNN은 2.6%밖에 안 되고 대전방송은 10.8%입니다. 이에 비해 제주방송은 40% 정도 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큼니다. 이것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제작비를 그만큼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자체제작비율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당 투여하는 제작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봐야 할 것은 위원회가 정한 최소 제작비가 투여되도록 지도를 해야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체제작비율이 낮아지거나 또는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작비는 저희들이 자체가 됐든 외주가 됐든 공동이 됐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직접제작비만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시정명령(안) 1항 중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표현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지침」 제정 및 한국방송공사 협찬고지 법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4-35-10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지침」 제정 및 한국방송공사 협찬고지 법규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지침」 및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상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와 세무기준 및 업무 절차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제정하고, 「방송법 제74조」,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협찬고지 허용범위를 위반한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침 안 제2조 위반행위 관련된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의 각 금액을 기준금액, 조정금액, 최종부과금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종류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의 협찬분류 기준 등에 따라 지침 안 [별표1]에서 캠페인협찬, 행사협찬, 제작협찬, 시상품등협찬, 장소등협찬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과태료 가중·감경과 관련하여서는 처분경력·협찬의 정도 등의 기준들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 과태료 합에서 각각의 감경 과태료 합을 공제하여 최종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고려사항으로 동일한 종류 위반행위 발생기간, 제작비 대비 협찬금액 비율, 그리고 협찬권유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는지 여부 등 그리고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기준마련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 최종부과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한국방송공사 협찬고지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경과입니다. 올해 3월 최민희 의원실로부터 한국방송공사 '걸어서 세계속으로(일본편)'이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3월 6일 한국방송공사 측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 해당 프로그램의 협찬고지 규정 위반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5월 2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6월 3일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한국방송공사의 '걸어서 세계속으로' 2012년 10월 6일 방영된 프로그램은 총 제작비가 2,000여 만원으로서 방송사가 직접제작하는 경우에 교양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제작비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제작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허용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방송법 제74조 제1항, 시행령 제60조제1항, 제3호가목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은 그 밑의 박스표시로 정리했는데 제작진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일본 현지에서 제작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협찬고지하였으며, 후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이와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협정처분(안)입니다. 「방송법」 관련 규정과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별표2]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을 산정하여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스에 과태료 산정금액이 나와 있는데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50%를 감경하고, 그리고 협찬의 정도가 과중하기 때문에 50%를 가중하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사협조한 점을 반영하여 10% 감경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금액을 9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을 시행하고, KBS 측에 과태료 사전납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한 뒤에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는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안), 의결서(안), 협찬고지 관련 법령, 한국방송공사 의견 제출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KBS에 대한 과태료 처분(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이 여태까지 없었던 모양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한 예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처분한 예는 있습니다. 2012년도에 협찬고지 부분을 처분한 예는 있고, 지금 협찬고지와 방송광고가 분리되어 있는데 방송광고는 중앙전파관리소로 업무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주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방송광고에서 많이 발생했고,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처리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찬고지는 방송광고와 비교해서는 위반건수가 굉장히 적고 주로 신고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때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데 3페이지 밑에 지침(안) 제7조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기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0% 감해 준다는 것….

○ 반상권 방송광고정책과장

- 지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모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최종 납부금액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해 주면 해당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 20%까지 감경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 감경한 금액을 해당 사업자가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가 종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의 미납이나 실제 징수업무 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법에서 자진으로 먼저 납부하면 20% 감경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과태료 체납사례가 워낙 많고, 특히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스팸은 징수율도 굉장히 낮아서 이런 특례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그렇다면 저희가 통신사업자들 방송사업자들 여러 법에 의해 과징금 부과도 많이 하는데, 의견제출하라고 하면 대상사업자들이 거기에 위법 내지는 불법한 사례가 없다는 내용을 주로 적어 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과징금도 경감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앞으로 과징금 부분에 관해서도 과징금 납부의 원활화를 위해, 또 신속한 절차 종료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13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이행 실적평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 「'13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이행 실적평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13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이행 실적평가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입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상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사업자에 대한 '13년 이행실적 평가 결과와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의무 이행 확보방안을 보고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는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을 제출받고 의무제공 실적을 '14년 2월~5월까지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점검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14년 6월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13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업자는 전체 153개사 중 95개사이며, 1개의 유형이라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58개사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위반사업자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방안입니다.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한 첫 해인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 의무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위반한 내용과 '14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의 충실한 이행, 그리고 불이행 시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엄격히 취할

것임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그 평가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 평가결과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접수해 주시면 장애인방송 의무 불이행 사업자에게 위반사항 등을 통보하고, 그리고 의무이행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년도 방송에 대한 방송평가 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13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이행 실적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에 대해서 법으로 지정된 필수지정사업자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지정한 의무사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역시 필수지정사업자들은 잘 이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종편과 보도PP 66.7%, 중앙 지상파는 100%, 위성방송 100%입니다. 매우 좋고, 그런데 방통위 고시로 지정된 의무사업자 SO 48%, PP 47.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시로 지정됐다고 해서 의무나 책무가 소홀해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특별한 수단을 써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방송을 하면 방송통신기금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매칭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사에서도 돈을 들이는 것이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50% 이상 됩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방송사 측에서 50% 이상 충당하고 방통위에서 50% 이하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장애인방송은 바로 방송의 공적 책무, 공익성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발기금을 지원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종편과 보도PP도 사회적 책무와 공익성이 SO나 일반PP보다는 높다고 생각해서 필수지정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성률은 66%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고시의무사업자 달성률이 반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특정 미디어그룹의, 특정 계열의 PP, SO들의 달성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름을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만 할 수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CJ 계열의 SO와 PP들이 매우 낮습니다. 이유가 있는지, 그 미디어그룹에서는 경영방침이 그런지 분위기가 그런 것인지, 장애인방송에 대해서 특별히 공익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SBS의 스포츠채널 자회사 PP도 달성률이 낮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렸듯이 오늘 보고한 이후에 의무사업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련된 제도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가 들어갈 것이라는 방통위의 명확한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도 뒤에 <표>를 보니까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 국장님께서 행정계도 내지는 행정지도, 그래서 의무사업자들과 같이 회의해서 우리 규정이 이렇고 앞으로 지키지 않으면 또는 초과달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재하겠다, 이것만 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평면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막방송은 실적치가 낮는데 비해 화면해설방송은 초과달성하는 곳이 있고, 특이한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우리 제도가 현실과 안 맞을 수도 있어서 특이한 방송사업자인 경우에 목표대비 실적치가 아주 높거나 낮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 부분만 굉장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설문을 해서 이유를 분석해보면 회의를 할 때 좀 더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설명 내지는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소PP 중에 실적이 굉장히 높은 PP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내지는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표를 할 때 전체 <표>를 종합해서 붙이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보도자료를 낼 때는 이런 소규모 PP이면서 자막방송이든 방송 화면해설방송이든 실적치가 높은 PP들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별도로 배포된 중간이행 목표치가 20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연도가 지정되어 있고, 또 종편·보도PP 그리고 위성파 SO, 그리고 PP와 CP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각 연도

별로..., 이것이 달성 목표치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면 이 목표치가 각 방송사들에게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 이런 목표치로 할 테니까 이것을 충족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이것이 고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공지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논의한 것은 지난해 결과에 대한 평가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면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계도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정지도하는데 내년부터는 이 목표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는 제재에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공지가 이번에 됩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런 공지를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제 판단에는 위성방송과 SO의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할당비율과 PP의 할당비율이 경제적인 파워 때문에 직사채널 쪽, 화면해설은 조금 더 비중을 높게 해 놓았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직사채널의 시청률과 일반PP, 프로그램이 좋은 PP들은 그쪽이 오히려 시청층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실제로 수혜를 받는 것은 PP 쪽에서 장애인방송을 많이 해 주면 재미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PP가 경제적으로도 조금은 더 SO보다는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배려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PP도 적어도 위성방송이나 이런 직사채널 수준의 프로그램이 퍼센티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판단이 듭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까 나누어 주신 <표>를 보면 고시의무사업자는 제외하더라도 필수지정사업자를 보면 3가지 방법으로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입니다. 대체로 자막과 수화통역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이고, 화면해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국가에 등록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수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략 20만명 정도 되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25만명 정도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청각보다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막이나 수화통역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화면해설서비스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수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2016년까지의 목표치가 이러한 자막이나 수화통역에 비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방송복지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서비스로부터 소외가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여러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목표치를 정했겠지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배려를 할 수 없는지,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은 화면해설방송의 편성비율 목표가 높아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자막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의 10배 정도가 화면해설방송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방송사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방통위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 지정된 지상파, 유료, 그다음에 PP 가운데 필수지정사업자로 지정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누구나 무료 내지는 저렴한 가격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제공사업자를 필수지정사업자로 해 놓았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들이 있겠으나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이 보편적 서비스로부터, 특히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편적 방송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지방방송사들은 목표치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KBS는 지방방송사가 전부 다 95%인데 MBC는 75%도 있고, 88%도 있고, 80%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은 목표치가 조금씩 다른데, 물론 별도로 배포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역지상파도 2015년 12월까지의 최종 편성비율 목표가 자막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도기라서 중간적인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목표치는 각 지역방송사들이 스스로 제시하는 것입니까?

○ 김중영 시청자지원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내년까지는 다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중간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 김중영 시청자지원팀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어제 서면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방송심의, 재심에 관한 건입니다. 1건은 KBS가 신청한 2014년 4월 18일자 KBS 뉴스특보와 다른 하나는 JTBC가 신청한 2014년 2월 18일자입니다. 2월 18일 JTBC는 오래된 것이고, 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KBS 건을 간단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1심의 처분은 ‘경고’였습니다. 보도내용은 많이 알려진 어느 선실에 많은 시체가 뒤엉켜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다시 입에 담기도 매우 참담한 그런 보도내용입니다. 4월 18일이면 4월 16일 참사 사고가 터진 뒤 이틀 뒤입니다. 물론 선실 안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실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실확인이 안 된 보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런 선정주의적인 보도가 피해 유족들의 상처를 더욱 덧나게 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았고, 아무래도 국민 여론층, 시민단체들의 압력요구에 따라서 심의했을 것입니다. 저는 원심 판단이 최고

수위의 중징계,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재심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주의'로 낮췄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 드린 JTBC, 이것은 '기각'이었습니다. 대부분 재심은 '기각'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제3기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재심 이후의 절차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빨리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재심 결과에 대한 서면회의에 가부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否)를 표시해도 우리가 부결시킬 방법도 없었다고 하고 무조건 기권입니다. 기권의 이유는 우선 심의를 다수결로 해서 안 된다, 그 결과 정치심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결과가 행정소송에 제기되어서 연달아 패소가 나오는 그런 방송통신 전반적인 제도의 불신을 초래하는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빨리 방송통신심의, 재심 이후의 절차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관여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연구반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제3의 기관에서 그 재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해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8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5분 폐회 】